

파주시사무의읍·면·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

□ 제안이유

- 지방세 제증명의 발급사무와 관련하여 시에서 발급하는 납세증명 및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업무를 지역여건상 읍·면·동에서도 발급토록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신설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시세 납세증명 및 세목별과세증명 발급 1건 신설

□ 검토의견

지 방 자 치 법

제95조 (사무의 위임등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 (개정 94·12·20)

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무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.

지 방 세 법

제3조 (지방세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조례)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, 과세객체, 과세표준, 세율 기타 부과·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.

제4조 (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의 위임 등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규정된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.

제38조 (납세증명서의 제출 등)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에 관한 납세증명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.

- 지방자치법 제95조 규정 및 지방세법 제3조·제4조·제38조 규정에 의거 지방세 제증명의 발급사무와 관련하여 시에서 발급하는 납세 증명 및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업무를 지역여건상 읍·면·동에서도 발급토록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적합성이나 내용타당성에 문제점이 없음.